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대통령령 제34289호)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소독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등 마련, 살처분 처리 비용의 국비지원 조건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건 개선 등을 하기 개정 되었습니다.(시행일 : 2024.3.15.)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군·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군·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시·군”을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로, “경우”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재정 지원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